

재정경제부 제2001-9호

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
금지등에 관한 고시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001년 5월 24일

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

제1조(목적) 특별소비세법(법률 제6294호, 2000.

12. 29공포) 및 교통세법(법률 제6295호, 2000. 12. 29공포)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 물품)

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을 다음과 같다.

1.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나목, 다목, 라목, 바목 및 아목에 규정된 과세물품
2. 교통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

제3조(적용대상자)

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.

1.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(이하 “석유정제업자”라 한다)
2. 석유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(이하 “석유수입업자”라 한다.)
3.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(이하 “석유판매업자”라 한다.)

제4조(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)

- ① 석유정제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 반출량

의 115%(중유는 120%)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석유수입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통관하는 제 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기간과 당해 년도 직전 2개월(3월 및 4월)간 수입물량을 비교하여 많은 것의 115%(중유는 120%, LPG중 부탄은 140%)를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 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등 금지)

① 석유판매업자는 매년 5월 및 6월에 제2조의 물 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 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석유판매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신고센터 설치)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시·도는 “석유제 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”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반출·수입물량 보고)

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매년 5월과 6월중에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 수입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(적용시한)

이 고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.

제9조(기타)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 여는 국세청장이,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 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 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